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9. 1.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580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2025. 9. 1.)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미래문화국장 : 문경수)

가. 제안이유

- 강남관광정보센터의 명칭을 강남메디컬투어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문 구조 개편 및 용어 정비(16개 조항→21개 조항)
- 의료관광의 정의를 상위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수정(안 제2조)
 - (기존) “강남구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 (변경) “「관광진흥법」 제12조2에 따라”

-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신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등
- 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위치 조항 추가(안 제11조)
 - (신설) “안내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61에 둔다”
- 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추가(안 제21조)
 - (기존) “안내센터의 운영 업무”
 - (변경) “안내센터의 시설관리·운영 업무”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1)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1) 입법예고(2025.7.11. ~ 2025.7.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I. 개요

-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개정안은 기존 강남관광정보센터가 강남메디컬투어센터(강남구 의료관광 안내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정(2010. 11 5.) 이후 여러 차례(7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삭제된 조항이나 가지번호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2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주요 개정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문구 정비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용어 정의 순서 및 문구 정비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 현행과 동일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해촉)	- 위원회 관련 조문 순서 재배치 및 문구 정비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장의 직무 조문 신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0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 수당 등)		
제8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운영)	제11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 등)	- 의료관광안내센터 위치 명시
제9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등)	제12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위촉 등)	- 조 제목 변경 및 문구 정비
제9조의2(의료관광 전문인력 해촉 등)	제13조(의료관광 전문인력 해촉 등)	- 문구 정비
제10조(홍보마케팅)	제14조(홍보마케팅)	- 문구 정비
제11조(예산 지원)	제15조(재정적 지원)	- 조 제목, 문구 및 호 정비
제12조(협력기관의 지정)	제16조(협력기관의 지정 등)	
제12조의2(협력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7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 협력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조문 배치, 문구 정비

현행	개정안	주요 개정 사항
	제18조(서비스 평가)	
제13조 <삭제>		
제13조의2(협력기관의 해촉 및 지정취소 등)	제19조(협력기관의 지정취소)	- 조 제목 및 문구 정비
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20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 띄어쓰기 정비
제15조(업무의 위탁)	제21조(업무의 위탁)	- 시설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명시
제16조(시행규칙)		- 삭제

II. 주요 내용 검토

□ 정의 규정 정비(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의료관광” 을 용어 정의하면서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를 인용하였음.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괄호를 사용하여 “의료관광” 을 정의하고 있긴 하나, 기본적으로 해당 조문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1. “의료관광” 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게 되면 해석상 다소 부자연스럽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음. 또한 자치조례는 필요하다면 다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다르게 용어를 정의할 수 있으므로 법 조문 인용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조제2호에서는 [2. “외국인환자” 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 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고 용어 정의하였음. 개정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외국인환자” 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사항을 재기재한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과 같

이 규정하게 되면 괄호 안에 “보건복지부령”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바, 관계 법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수정 의견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p> <p>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의료관광”이란 <u>외국인환자</u>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p> <p>2. “외국인환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u>외국인환자</u>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p>

○ 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는 현행 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하면서 약칭을 사용하고 있던 부분을 바로잡는 등 정의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것임.

□ 위원회 규정 정비(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는 위원회 관련 조문을 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순서로 재배치하고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위원장 직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안 제9조)함. 위원회 명칭이나 위원 자격, 임기 등에 관한 실체적인 사항의 변경은 없기 때문에 부칙에 경과조치 등의 입법 조치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5조의 조 제목에 불필요한 의존명사 “등” 은 삭제하고 띄어쓰기 수정은 필요해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견
-------	---------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② (생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1. 강남구의회 <u>소관위원회</u>에서 추천한 강남구의원 2명</p> <p>2. ~ 3. (생략)</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1. 강남구의회 <u>소관 위원회</u>에서 추천한 강남구의원 2명</p> <p>2. ~ 3. (생략)</p>

- 의료관광 안내센터 위치 명시 및 시설관리 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 및 제21조)
- 안 제11조제2항는 2013. 6. 26. 압구정로 161에 설치·운영되어 오던 강남관광정보센터가 2023. 6. 22. 리뉴얼을 거쳐 의료관광 종합 커뮤니케이션센터 역할을 위한 “강남메디컬투어센터”로 재개관 함에 따라 시설의 위치를 명시한 것임. 공공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시설 설치와 관련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구민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조례에 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음. 이에 위치 규정과 함께 명칭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는 방안의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안 제11조제1항 중 “유치사업자”를 안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용어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11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 등)</p> <p>① 구청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u>유치사업자</u>의 의료관광 활동과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안내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61에 둔다.</p>	<p>제11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 등)</p> <p>① 구청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u>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u>의 의료관광 활동과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u>안내센터의 명칭은 강남메디컬투어센터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u></p>

개정안	수정의견
③ (생략)	남구 압구정로 161에 둔다. ③ (개정안과 같음)

- 안 제21조(업무의 위탁)에서는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업무 외에 시설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는바, 현재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현황과 향후 위탁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운영 현황]

□ 운영 개요

- 개 관 일 : 2013. 6. 26.(재개관 : 2023. 6. 22.)
- 위 치 : 강남구 압구정로 161
- 규 모 : 연면적 820㎡ (248평)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가설건축물
- 운영시간 : 10:00 ~ 18:00 (평일)
- 운영인력 : 외국어 전문직 4명 (영·중·일·러)
- 소요예산 : 금220,781,000원
- 사업내용 : 강남메디컬투어센터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 주요업무



- 외국인환자 온·오프라인 문의 응대
- 외국인환자를 위한 개별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픽업, 통역, 부가세환급, 환전)
- 의료관광 외국어 플랫폼 운영(온라인 상담, 통역연결, K-Culture 프로그램 운영 등)
- 의료관광 다국어 SNS 홍보 채널 운영(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웨이보 등)
- 국내·외 바이어 ↔ 협력기관 의료관광 비즈니스 미팅 개최
- 협력기관 대상 실무교육 제공
- K-Culture 프로그램 운영(K-POP 댄스, 퍼스널컬러 등)
- 주민대상 건강강좌 및 벽면서가 운영

□ 2025년 운영 실적 ('25. 7. 11. 기준)

- 방문객 수 : 6,942명 (내국인 4,654명 / 외국인 2,288명)
- 총 상담 문의 : 9,242건 (외국인 3,652건 / 내국인 5,590건)
- 진료상담 문의 : 339건
- 코디네이터 연결 : 234건 (영어 133건·일본어 52건·중국어 32건·기타 17건)

○ K-Culture 프로그램 등 운영 결과

퍼스널컬러	근력강화 트레이닝	조향만들기	원데이 K-Food	AI 피부측정
추진횟수 : 9회 13개국, 103명 참여	추진횟수 : 8회 17개국, 91명 참여	추진횟수 : 9회 27개국, 75명	추진횟수 : 2회 11개국, 22명	추진횟수 : 1회 6개국, 12명

(자료: 관광진흥과)

□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위촉 및 해촉(안 제12조 및 제13조)

- 안 제12조에서는 의료관광 전문인력 위촉과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 면에서 현행 조례와 유사함. 다만, 안 제13조의 조 제목과 외래어 사용, 부자연스러운 문장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3조(의료관광 전문인력 해촉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해촉할 수 있다. 1. 성실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2. 불법 브로커와 거래 등 불법적인 활동이 적발되었을 때 3. <u>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때</u>	제13조(의료관광 전문인력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해촉할 수 있다. 1. 성실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2. 불법 중개인과의 거래 등 불법적인 활동이 적발되었을 때 3. <u>그 밖의 사유로 의료관광 전문인력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u>

□ 그 밖의 사항

- 안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는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여 제1항에 계획명에 대한 약칭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협력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조례상의 규정 내용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조문 순서 재배치 및

문구 정비를 한 것임.

- 다만, 안 제16조 조 제목에 불필요한 의존명사 “등” 은 삭제가 필요해 보이고,
- 안 제19조제2호에서는 “2. 제18조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로 의결된 때” 협력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용하고 있는 제18조는 협력기관에 대한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이므로 호 내용과 맞지 않아 수정 필요함. 참고로 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 제12조의2(협력기관의 지정기준 등)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안 제17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제3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정합성을 위해 안 제17조의 조 제목도 함께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아래 수정 의견을 제시하나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u>기본계획</u> 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 4. (생략)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u>기본계획</u> (이하 “ <u>기본계획</u>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16조(<u>협력기관의 지정 등</u>) 구청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u>협력기관의 지정</u>) (개정안과 같음)
제17조(<u>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u>) ① 제16조의 협력기관은 협력기관 지정계획,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공개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	제17조(<u>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u>)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	수정의견
<p>여야 한다.</p> <p>③ 협력기관의 지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력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관광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시설 등 2. 행정처분 또는 민원접수 이력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④ 협력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p> <p>제19조(협력기관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제18조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로 의결된 때 3. ~ 4. (생략) 	<p>제19조(협력기관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안과 같음) 2. 제17조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로 의결된 때 3. ~ 4. (개정안과 같음)

Ⅲ. 종합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관광 안내센터 운영 현실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제정 이후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문 구조를 재구성·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지난 2023. 6. 22. 강남메디컬투어센터로 재개관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강남관광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지 못한 결과 상당 기간 강남관광정보센터와 강남메디컬투어센터가 혼재된 상황을 초래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음. 이에 향후 정책 변경 과정에서 자치법규 적시정비를 비롯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그 밖에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앞서 검토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 논의가 필요해 보임.

-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 5. 토론 요지 : “없음”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580호

제안일자 : 2025.9.1.

제 안 자 : 복지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 정합성을 위해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관계 법률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수정 (안 제2조제2호)
- 명칭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안 제3조, 안 제11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 외래어 사용, 불필요하고 부자연스러운 문장 등 수정 (안 제5조, 안 제13조, 안 제16조)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부령에 따라”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5조의 제목 “(위원회의 구성 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소관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유치사업자”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안내센터”를 “안내센터의 명칭은 강남메디컬투어센터라 하고, 위치”로, “161에 둔다”를 “161로 한다”로 한다.

안 제13조의 제목 “(의료관광 전문인력 해촉 등)”을 “(의료관광 전문인력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브로커와”를 “중개인과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그 밖의 사유로 의료관광 전문인력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안 제16조의 제목 “(협력기관의 지정 등)”을 “(협력기관의 지정)”으로 한다.

안 제17조의 제목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 기준 등)”으로 한다.

안 제19조제2호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p> <p>3. ~ 6. (생 략)</p> <p>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p> <p>② (생 략)</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 략)</p> <p>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p>	<p>제2조(정의) -----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 ----- -----.</p> <p>3. ~ 6. (개정안과 같음)</p> <p>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p>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다.

1. 강남구의회 소관위원회에서
추천한 강남구의원 2명

2. 3. (생략)

제11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
치 등) ① 구청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의료관광 서비
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
시 강남구 의료관광 안내센터
(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
구 압구정로 161에 둔다.

③ (생략)

제13조(의료관광 전문인력 해촉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경우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불법 브로커와 거래 등 불법

-----.

1. ----- 소관 위원회-----

2. 3. (개정안과 같음)

제11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
치 등) ① -----
----- 외국인환자 유치사
업자-----

-----.

② 안내센터의 명칭은 강남메디
컬투어센터라 하고, 위치-----
----- 161로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의료관광 전문인력 해촉)

-----.

1. (개정안과 같음)

2. --- 중개인과의 -----

적인 활동이 적발되었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때

제16조(협력기관의 지정 등) (생략)

제17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 ④ (생략)

제19조(협력기관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8조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로 의결된 때
3. 4. (생략)

3. 그 밖의 사유로 의료관광 전문인력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16조(협력기관의 지정) (개정안과 같음)

제17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제19조(협력기관의 지정취소) --

--.

1. (개정안과 같음)
2. 제17조-----

3. 4.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환자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의료관광의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에게 등록한 강남구 소재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강남구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6.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의료상담·진료지원·관광 등 의료관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남구의회 소관 위원회에서 추천한 강남구의원 2명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의 언론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제6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 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

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의 명칭은 강남메디컬투어센터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61로 한다.

③ 안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및 홍보

2. 통역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역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료관광 전문인력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해촉할 수 있다.

1. 성실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2. 불법 중개인과의 거래 등 불법적인 활동이 적발되었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의료관광 전문인력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14조(홍보마케팅)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술, 복합의료관광 상품 및 관련 관광정보에 대한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

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6조(협력기관의 지정) 구청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기준 등) ① 제16조의 협력기관은 협력기관 지정계획,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공개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력기관의 지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력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의료관광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시설 등

2. 행정처분 또는 민원접수 이력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력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8조(서비스 평가)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협력기관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폐업 또는 강남구 외 지역으로의 진출한 때
2. 제17조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로 의결된 때
3. 서비스 평가 결과 관련 법 위반사항 처분 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내센터 시설 관리·운영 업무
2.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0
----------	-----

제출연월일 : 2025. 8. 1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관광진흥과

1. 제안이유

강남관광정보센터의 명칭을 강남메디컬투어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문 구조 개편 및 용어 정비(16개 조항→21개 조항)
- 나. 의료관광의 정의를 상위법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수정(안 제2조)
 - (기존) “강남구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 (변경) “ 「관광진흥법」 제12조2에 따라”
- 다.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신설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조항 정비(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신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등

라. 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위치 조항 추가(안 제11조)

- (신설) “안내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61에 둔다”

마. 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추가(안 제21조)

- (기존) “안내센터의 운영 업무”
- (변경) “안내센터의 시설관리·운영 업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외국인 의료관광(의료관광이란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 관련 기관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5.7.11. ~ 2025.7.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환자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의료관광의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관광”이란 「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에게 등록한 강남구 소재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국제회의업, 관광숙박업, 여행업 및 무역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강남구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6.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외국인환자를 위해 국내 입국에서 출국까지 원무·의료상담·진료지원·관광 등 의료관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미래문화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강남구의회 소관위원회에서 추천한 강남구의원 2명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의 언론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제6조(위촉직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 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안내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61에 둔다.

③ 안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관광에 대한 온·오프라인을 통한 상담 및 홍보
2. 통역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의료관광 전문인력 위촉 등)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의료관광 전문인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역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료관광 전문인력 해촉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해촉할 수 있다.

1. 성실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
2. 불법 브로커와 거래 등 불법적인 활동이 적발되었을 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때

제14조(홍보마케팅)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기술, 복합의료관광 상품 및 관련 관광정보에 대한 홍보마케팅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협력기관이나 의료관광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2. 의료관광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
3.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6조(협력기관의 지정 등) 구청장은 의료관광 공동 홍보마케팅,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효율적인 강남구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제16조의 협력기관은 협력기관 지정계획, 신청절차, 신청기한 등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 공개모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협력기관의 지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력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의료관광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장비, 시설 등
2. 행정처분 또는 민원접수 이력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협력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8조(서비스 평가) 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협력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서비스 평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협력기관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협력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폐업 또는 강남구 외 지역으로의 진출한 때
2. 제18조에 따른 협력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취소로 의결된 때
3. 서비스 평가 결과 관련 법 위반사항 처분 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0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내센터 시설 관리·운영 업무
2.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교육 업무
3.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관광진흥과 행정7급 이현(☎ 02-3423-7022)